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독립운동기념관 종합감사 -

2020. 11. .

처분요구일람표

- | | |
|----------------------|-----------|
| 1.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 (통보 및 주의) |
| 2.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 (통보) |
| 3.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 |
| 4.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 (주의) |
| 5. 신흥무관학교 건축물 축조 부적정 | (통보) |
| 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 이수 | (주의) |

경 상 북 도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인사규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 및 제35조 내지 제43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징계위원회 심의대상자 출석통지 부적정

「인사규정」 제39조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한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는 경상북도 감사관 민원관련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에 따라 2018. 5. 29. 성회릉, 소속직원 관리 부적정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 〰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2018. 6. 5.(10:30) 징계위원회 기일을 확정하고도 심의대상자에게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그 후 징계위원회 위원의 정족수 미달로 당초 계획한 2018. 6. 5.(10:30)을 연기하여 2018. 6. 12.(10:30)로 개최일정을 변경한 후 심의대상자에게는 2018. 6. 8. 문서의 효력을 상실한¹⁾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수령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

1) 사무관리규정 제7조 문서의 효력발생, 제31조 직인의 종류, 제35조 날인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된 출석통지서를 교부 하였음

그 결과 징계심의 대상자 〰 〰 〰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하자(瑕疵)있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2. 징계위원회 회의록 미 작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심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진행순서, 심의 안건, 위원별 발언요지, 징계의결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정당한 근거 없이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 징계 심의·의결 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하였다.

3. 징계감경 부적정

경상북도 감사관-6473(2018. 5. 4.)호 「경상북도 감사관 민원관련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에 따르면 징계대상자 〰 〰 〰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요구하였다.

한편 독립운동기념관의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관장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결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양정은 중징계 단계를 벗어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월로 의결되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그 감경 사유 및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투명한 이유 없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양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의결을 하였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독립운동기념관은 해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독립운동기념관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심사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기념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은 아래 [표 1]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관계규정 및 기념관 내규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기념관 내규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성과급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은

- 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감경 및 감경제한 기준을 기관내규로 명시하는 등 직원 징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 ② 앞으로 직인 없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주의)
- ③ 관련자는 「독립운동기념관 인사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 ㉮㉮㉮의 내부결재(타부서 협의 없이 관장 결재)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166백만 원(총 4회분)을 지급하였다.

[표 1] 2017 ~ 2020 경영성과급 지급 내역

년 도	기관등급	지급률(%)	대상자 수(명)	지급액(원)	비 고
계				166,700,180	
2020	B등급	120	16	56,971,780	
2019	C등급	70	18	35,784,900	
2018	B등급	120	17	44,399,500	
2017	B등급	120	8	29,544,000	

2.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독립운동기념관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 중징계,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기념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관계규정에 따라 성희롱 등 징계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했다.

한편 독립운동기념관 ㉮㉮㉮ ㉮㉮㉮은 경상북도 특정감사의 ‘성희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 요구(2018. 5. 4.)로 2018. 6. 22. 감봉 3월 징계처분(독립운동기념관 경영2018-391)을 받았으며, 또한 위 징계건에 대하여 2019년 기관

경영평가(2018년실적)에 반영되어 기념관 기관평가 감점 1점의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은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2018년도 실적)을 지급하면서 2018. 6. 22. 징계자인 ㉮㉮㉮에 대하여 기념관 내부규정에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의 배제 등 제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래 [표 2]와 같이 ㉮㉮㉮ 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2,878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2] 징계자 경영성과급 지급 내역

년 도	직위	성 명	징 계		성 과 급		비고
			내 용	양 형	등급	지급액(원)	
2019	㉮㉮㉮	㉮㉮㉮	성희롱 등	감봉 3개월	B등급(70%)	2,878,300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규정 준용 명시 등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독립운동기념관은 출장명령에 따라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사용한 출장경비를 관계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 여비 및 위원회 실비변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기념관 직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경상북도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관장은 직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고, 수정수령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출장비 중 자동차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기념관은 임·직원의 출장비 중 자동차 운임은 동승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은 2018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간 교통 운임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동승자에게 43건 1,113천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은

출장 동승자에게 지급한 교통비 1,113,500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시정), 앞으로 관계규정과 달리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
내 용	

독립운동기념관은 해외탐방(만주) 및 ■■■■캠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관 여비 및 위원회 실비변상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기념관 직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다만,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기념관은 여행사 업체를 통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용역 사업을 인솔하는 임·직원 국외출장의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했다.

한편 독립운동기념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탐방(만주) 및 ■■■■ 캠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행사와 계약체결을 통해 임차 버스로 6건의 해외탐방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6건의 해외탐방 사업 인솔 직원 13명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을 임차하여 추진하는 해외현지 탐방임을 감안하여 일비는 2분의 1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인솔 직원 13명에게 일비 전액을 지급하여 지급일비의 2분의 1인 1,561천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은

앞으로는 위 와 같은 경우 참가직원에게 일비를 1/2만 지급하고, 참가직원은 여행사와의 계약금 중 차량임차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계약인원으로 나눈 금액만 지불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신흥무관학교 건축물 축조 부적정**
소 관 청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내 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과거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배우고, 독립군의 훈련과정과 전투를 체험하고자 2017. 7. 부터 2020. 9. 감사일 현재까지 청산리전투 체험장(GPR서바이벌), 태봉전투 체험장(활쏘기), 권총사격장 등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표]와 같이 신흥무관학교 청산리전투 체험장, 태봉전투 체험장, 사격장 등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사격체험장 등 건축물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위치)	건축물용도	건축면적 (㎡)	건물구조	건축협의 여부
1	실내사격 체험장 (천전리87)	권총사격체험 및 훈련	45	센드위치 패널	부
2	태봉전투장 (천전리 86-1)	전통활쏘기 체험 및 체력단련	60	경량철골구조 아크릴 지붕	부
3	청산리 전투장 (천전리 86-3)	GPR서바이벌 체험장 통제실	7.84	철골조 센드위치 패널	부
4	GPR창고 (천전리 86-1)	GPR서바이벌 장비보관	22.5	컨테이너	부
5	신흥무관학교창고 (천전리 85-3)	각종공구 및 페인트 총기보관	24	컨테이너	부
6	원형쉼터 (천전리 86-1)	쉼터 및 안전교육장	177.276	경량철골구조 아크릴 지붕	부
7	기념관 물품창고 (천전리 240)	청소소구 및 시설장비 창고	18	컨테이너	부
계(7개동)			354.616㎡		

이에 따라 청소년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유료시설물이 불법건축물에서 이용되게 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은

무허가로 축조된 가설건물 7동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 이수

소 관 청 독립운동기념관

관 계 부 서

내 용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교육훈련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53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020. 3. 27.까지 실무교육²⁾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했다.

2) 실무교육 이수 기한 2020. 3. 27. 이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일정으로 서울지부에서는 매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구경북지부 1월~2월중 22회 실무교육이 진행되었음

[표] 경상북도 독립기념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성명	직급(직책)	자격종별	선임신고일	최종교육이수일 (이수기한)	비 고
홍○○○	과장 (실무담당자)	1급소방안전 관리자격	2017. 7. 20	2018. 3. 28 (2020. 3. 27)	이수기한 1~2개월 전 실무교육 안내문 통지 ³⁾

그런데도 위 관서는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을 교육이수 기한 최소 1개월 전에 한국소방안전원 대구지부로부터 접수를 하고도 이를 간과(看過)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미이수 등 소방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주의)

3)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1항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함